

방송강령제정과 MBC 심의실태

육창웅
MBC 심의실장

I. 서론

방송매체의 영향력이 날마다 증대되어 가고 이에 따른 사회적 공익성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우리는 방송종사자들의 직업윤리관 확립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더욱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에 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앞으로 전개될 다매체 다채널의 방송환경에 대비해 방송매체의 실천가치를 정하고 이의 준수를 위해, 방송사들은 종래의 직업윤리규정에서 진일보 하여 실천을 전제로 한 윤리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이며 적극적 의미의 방송강령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방송강령의 제정과 더불어 방송 사내의 심의실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의 자율적 평가와 심의를 제도화하여 매체의 공익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문화방송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강령의 제정 배경과 담고 있는 내용을 고찰하고 프로그램 심의실태를 기술하여 방송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 의무에 대해 준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화방송의 방송강령

문화방송의 윤리강령은 지난 7월 2일 선포한 「MBC 방송강령」이라 하겠다. 이는 금년 초에 출범한 방송강령제정 팀에 의해 6개월에 걸친 협의를 거치고 국내외의 광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분석하여 문화방송의 현재와 예견되는 위상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MBC 고봉강령」의 제정목적은 방송의 사회적, 역사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언론과 문화창달을 통해 국가발전과 사회적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 공기인 방송매체를 담당하는 방송인으로 자유롭고 책임있는 방송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MBC 방송강령」은 단순히 방송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적극적 의미의 윤리기준에서 탈피하여 방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사회변화, 방송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규범을 정한 방송강령이라는 점이 독특하다고 하겠다.

「MBC 방송강령」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전문, (2) 총강, (3) 프로그램기준, (4) 행동준칙으로 구별할 수 있다.

방송강령 전문은 강령제정의 기본정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민의 방송인 문화방송에서 근무하는 방송인의 사회적, 역사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직업인으로서 올바른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원칙과 실천기준을 마련하여 행동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없다.

강령에서는 방송이 지향해야 할 7대목표로 (가) 인격 존중, (나) 사회정의와 민주질서, (다) 평화통일과 민족화합, (라) 민족문화의 창출, (마) 편성, 보도, 제작의 자유, (바) 공정성과

반론권, (사) 직업윤리와 품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기준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성실히 구현하기 위해 (가) 프로그램의 일반기준과, (나) 보도프로그램의 기준, (다) 방송순서의 일반원칙을 정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기준을 정하고 있다.

「MBC 방송강령」의 마지막 부분은 MBC의 권위와 신뢰에 손상을 끼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승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준칙을 명시하고 있다. 「MBC 방송강령」을 요약,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전 문 …… 강령제정의 목적

1. 총 강 …… 방송이 지향해야 할 7대목표
2. 프로그램 기준
 - (1) 일반프로그램 기준
 - (2) 보도프로그램 기준
 - (3) 방송순서의 일반원칙
3. 행동준칙

III. MBC의 심의 실태

우리나라 심의의 역사는 1973년 방송법이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 후로 방송매체의 영향력 증대로 인해 방송심의기능이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 동시에 방송법이 개정될 때 마다 심의업무를 법제화하여 심의실을 법적기구로 상설의무화하고 자율심의 기능을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에 개정된 방송법에도 자율심의규정을 예법 제 30조의 2에 「방송국은 그 내부에 방송순서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하며,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하고는 방송순서가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화방송은 1982년부터 사규로 「방송심의규정」을 제정하여 방송법의 개정과 방송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심의규정을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겠다.

문화방송의 심의규정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 1 장은 총칙으로 심의의 정의, 심의대상, 심의구분, 심의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 2 장은 방송원고 심의에 관한 내용을,
- 3 장은 제작적 심의에 관한 규정을,
- 4 장은 모니터 심의에 관한 규정을
- 5 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
- 6 장은 보칙으로 심의관련 문서 보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MBC의 심의업무는 상기규정에 의해 심의실이 주관하고 있는 바, TV 심의부와 Radio 심의부, 시청자부 등 3개 부서로 구분하여, TV 프로그램은 TV 심의부에서 Radio 심의부는 라디오프로그램 심의와 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시청자부는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의 사원 이외에 외부 모니터 그룹 22명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의업무의 형태는 대별하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볼 때 주요부서인 심의실이 담당하는 심의업무와 제작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업무로 볼 수 있고 둘째로는 제작물의 방송을 기점으로 볼 때 제작물 제작전에 이루어지는 (가) 사전심의와 (나) 사후심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심의기능은 제작프로그램이 복합적, 상호교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의기능 또한 상호교차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들의 큰 흐름을 구별해 본다면 가. 기획단계 나. 사업심의 다. 제작물 심의 라. 모니터 심의 등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심의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획단계의 심의

프로그램 제작의 경우 모든 과정의 기본 출발점인 프로그램 제작 담당부서인 현업부서일 MBC의 경우 TV 제작국, 교양제작국, Radio 국, 보도제작국-에서 기획단계에서 심의기능이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작담당자가주제의 선정, 작가의 선정, 극본의 내용 등 프로그램의 근간을 중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2 사전 심의기능을 담당한 심의실

제작현업에서 완성된 원고 및 대본은 제작 3 일전까지 심의실로 제출되어 담당 심의위원들의 정토를 거쳐 심의의견을 첨부하여 현업부서로 조가하고 있다.

3. 완성된 제작물의 심의

완성된 제작물은 회사의 심의규정 3 장에 명시된 「제작물 심의위원회」 (해당제작국내에 설치하며 당해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2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의 심의를 거쳐 방송적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해당 제작국에서 결정하지 못한 제작물은 심의실과 합등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율심의기능을 극대화하고 있다.

4. 모니터 심의

모니터 심의는 제작프로그램의 방송송출 과정에 일어나는 심의기능으로 심의실의 주된 업무이다. 심의실에 소속된 심의담당 사원과 전 간부들이 매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모니터 하여심의 의견을 「일일방송 평가보고서」로 발간하여 심의기준 준수여부와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하여 제작부서와 유관부서에 배포하고 있어 프로그램 제작에 준거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5. 월간, 주간 프로그램 종합평가

매월 첫째 화요일은 전월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심의의견과 프로그램 평가내용을 제작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평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평가회를 통해 자율심의기능을 강화 하고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심의역할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매월 첫째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는 TV와 라디오 2개 부문의 특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집중평가하여

관련 제작부서의 간부와 심의실 담당부서장들이 프로그램 평가, 심의내용을 토론하여 자율심의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6. 시청자를 포함한 외부모니터 의견의 수렴

심의실의 시청자부에 속한 시청자센터를 통해 매일 접수되는 시청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통화의견(일평균 300 건)을 종합관리하여 「시청자센터 일일보고」를 일일발간하고 이를 제작부서에 배포하고 있으며 심의담당 전문지원외에 외부모니터를 모집, 운영하여 시청취 의견을 모집하여 주 1회 「MBC 모니터」를 발간하고 있다.

7. 심의규정 준수를 위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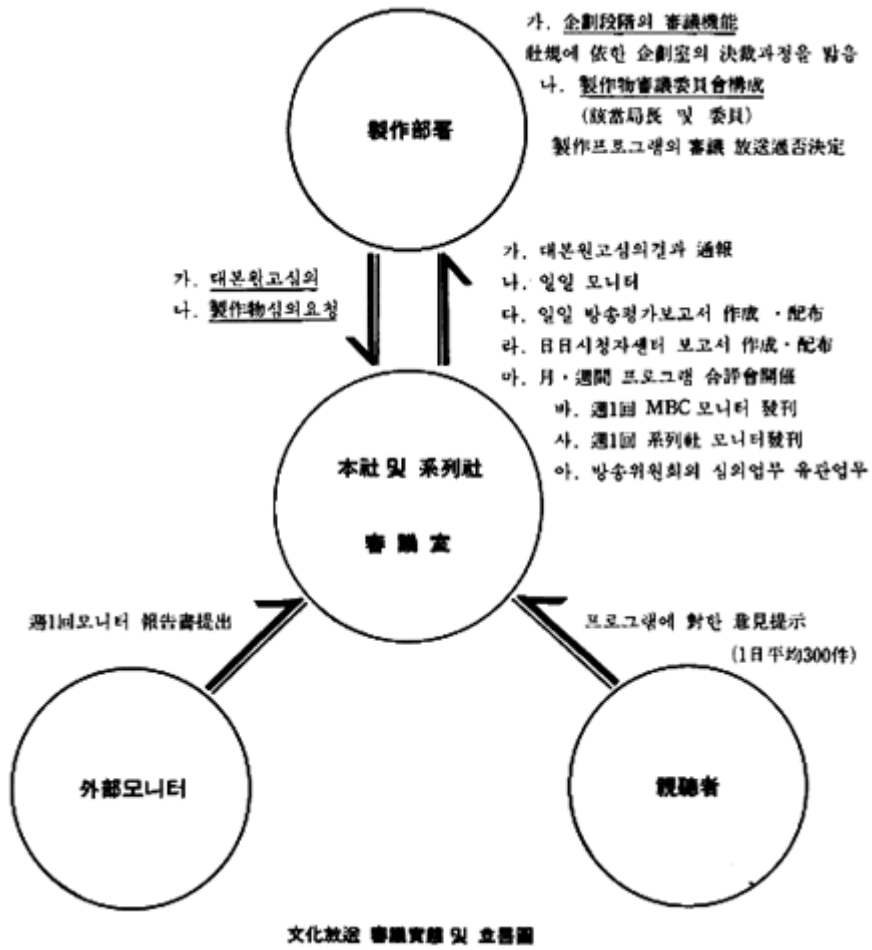
문화방송의 경우, 자율심의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제재조항을 심의규정 제 21 조에 명문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심의실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그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가. 심의결과 주요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한 경우.

나. 제작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방송한 프로그램으로서 사후심의에서 중요사항이 지적된 경우

다.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통보를 받거나 3개월 이내 3회 이상의 주의 통보를 받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문화방송의 심의실태는 자율심의를 목표로 두고 심의전문부서인 심의실을 중심으로 제작현업부서, 시청자, 외부모니터, 계열사심의실 등이 상호협조하여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대되는 사회적 책무인 공익성, 공정성을 위해 자율심의제도는 심도있게 강화되리라 생각된다.

문화방송의 심의실태를 종합적으로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 서울대 사대 교육행정과
- MBE TY 제작 3 부장. TV 제작국 부국장
- 현재 MBC 심의실장